

	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19. 06. 30.
		최종개정일자	2020. 02. 03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센터 업무 및 운영

제2조(주요업무 및 기능)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전공 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 운영전략 수립
2. 인문 기반 창의·융합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개정 2020. 02.03.>
3. 전공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
4. 전공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
5. 교양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
6. 교양 교육과정 개발, 개편, 운영
7.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연구
8. 교양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
9. 비교과 통합관리체계(역량인증제) 구축, 운영, 질관리 및 환류<신설 2020. 02.03.>
10.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 및 팀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 전문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전문위원은 전공과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, 개편, 운영, 평가 및 질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한다.
- ⑤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4조(운영계획의 수립·보고) 운영계획은 매 학년도 초에 센터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고, 센터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육혁신처장 승인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5조(협조요청) 센터는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3장 위원회

제6조(위원회) ① 교육혁신처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

는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와 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, 비교과운영위원회, 교육과정품질관리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20. 02.03.>

② 교양·전공교육과정개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 대학 전임교원을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교육혁신처장으로 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둔다.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20. 02.03.>

③ 비교과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장, 교수학습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기획산학처장을 당연직으로 둔다.<신설 2020. 02.03.>

④ 교양·전공·비교과 품질관리위원회는 학사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기획산학처장, 창의융합교육혁신센터장, 교수학습센터장, 학생상담센터장, 당연직으로 둔다.<신설 2020. 02.03.>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위원회는 학기당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반한다.

1. 전공·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연계 편성 운영전략 수립
2. 교육혁신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
3. 전공·교양교육과정 운영결과 및 평가
4. 전공·교양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계 구축
5. 비교과 통합관리체계(역량인증제) 구축, 운영, 질관리<신설 2020. 02.03.>
6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.